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393

발의연월일 : 2026. 6. 22.
발 의 자 : 이강일・양부남・김현정
복기왕・오세희・이주희
김남희・허 영・이정문
김용만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세 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였으나 실제 주주총회 운영 관행은 여전히 그 입법취지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정기주주총회의 특정 시기 집중 개최, 촉박한 소집통지, 이사 후보자・보수체계 등에 관한 정보 부족, 이사의 불출석 등으로 인해 주주총회가 실질적인 토론과 견제의 장이 아니라 형식적 승인 절차에 그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상법상 주주권 강화와 이사회 책임성 제고를 위한 반복적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현장 운영 단계에서 그 취지가 상당 부분 몰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아울러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회사가 전자투표 등 사전 의결권 행사 결과를 미리 확인한 뒤, 잔여 의결권의 위임 확보나 의결권 배분 전략을 통해 회사 측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대응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는 집중투표 제도의 본래 취지인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 기회 보장과 이사회 다양성 확보를 약화시키고, 주주총회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큼.

또한 외국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대규모 상장회사조차 주주총회 관련 핵심정보의 영문 제공이 충분하지 않아 글로벌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이 제한되어 우리나라가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되는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이사의 주주총회 출석의무를 명확히 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주주에게 의장 선임·변경 안건 제안권을 부여하는 한편, 주주총회 관련 중요사항의 사전공고 및 영문 공고를 확대하고, 집중투표 시 사전 의결권 행사 결과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실질적 권리행사를 보장하고 기업지배구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자본시장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권상장법인이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정하기 위한 기간과 기준일은 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65조의18제1항).

나. 주권상장법인의 이사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 출석하도록 하고,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65조의18제2항).

다. 일정한 주주제안권 행사요건을 갖춘 주주에게 주주총회 의장의 선

임 또는 변경 안건에 대한 주주제안권을 부여함(안 제165조의18제3항).

라. 주주는 별도의 통지 없이도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할 수 있으며, 주권상장법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165조의18제4항).

마. 주주총회일 4주 전까지 소집 공고를 하도록 하고, 이때 이사 후보자 정보,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함께 공고하도록 함(안 제165조의19제1항 및 제2항)

마.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소집 공고 및 이사 후보자 사항을 영문으로도 공고하도록 함(안 제165조의19제3항)

바.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전자투표나 서면투표 등의 사전 의결권 행사 결과를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공시하도록 함(안 제165조의20).

법률 제 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2제1항제1호 단서 중 “제165조의18은”을 “제165조의21은”으로 한다.

제165조의4제2항 중 “제165조의18에서”를 “제165조의21에서”로 한다.

제165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65조의18에서”를 “제165조의21에서”로 한다.

제165조의18부터 제165조의20까지를 각각 제165조의21부터 제165조의23까지로 하고, 제165조의18부터 제165조의2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65조의21(종전의 제165조의18)에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5조의18(주주총회 운영에 관한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상법」 제354조제1항의 기간은 1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같은 조 같은 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1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의 이사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가 질병·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주권상장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그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상법」 제363조의2제1항 또는 제542조의6제2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권상장법인의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장을 선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안하는 경우 같은 법 제363조의2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④ 주주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상법」 제368조의2에 따른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은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제165조의19(주주총회의 소집 공고에 관한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이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주주총회일의 4주 전까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이 주주총회 소집의 공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1.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이사 후보자의 자격, 후보 추천 사유, 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보고서

③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사항을 영문으로도 공고하여야 한다.

제165조의20(집중투표의 공시 특례)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82조의2 및 제542조의7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68조의3 및 제368조의4에 따른 사전 의결권 행사 결과를 주주총회일의 전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의 시기·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6. 제165조의18제3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의장 선임·변경에 관한 사항을 목적사항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27. 제165조의18제4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거부한 경우

28. 제165조의19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

29. 제165조의20을 위반하여 주주총회일의 전일까지 공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439조제2호가목 중 “제165조의18에”를 “제165조의21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주총회 운영 및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18부터 제165

조의20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5조의2(적용범위) ①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외국법인등. 다만, 제165조의16 및 제165조의18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생 략) ② (생 략)	제165조의2(적용범위) ① ----------. 1. ----------. ----------제165조의21은----------.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① (생 략) ② 주권상장법인은 합병 등을 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병 등의 가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 ④ (생 략)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65조의21에서----------.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

	음)
② 주권상장법인은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에 대하여 발행을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 ---------- ----------제165조의21에서----------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5조의18(주주총회 운영에 관한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상법」 제354조제1항의 기간은 1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같은 조 같은 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1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의 이사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

	만, 이사가 질병·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주권상장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그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상법」 제363조의2제1항 또는 제542조의6제2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권상장법인의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장을 선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안하는 경우 같은 법 제363조의2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④ 주주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상법」 제368조의2에 따른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은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신 설>	제165조의19(주주총회의 소집 공고에 관한 특례) ① 주권상장

	법인이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주주총회일의 4주 전까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이 주주총회 소집의 공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1.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이사 후보자의 자격, 후보 추천 사유, 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보고서 ③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사항을 영문으로도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5조의20(집중투표의 공시 특례)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82조의2 및 제542조의7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68조의3 및 제368조의4에 따른 사전 의결권 행사 결과를 주주총회일의 전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의 시기·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그 법인의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 권고,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 제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 25. (생 략) <신 설>	제165조의21(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 ---------- ---------- ---------- ---------- ---------- ---------- ---------- ---------- ----------. ------- ---------- ----------. 1. ~ 25. (현행과 같음) 26. 제165조의18제3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의장 선임·변경에

	관한 사항을 목적사항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27. 제165조의18제4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거부한 경우
<신 설>	28. 제165조의19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29. 제165조의20을 위반하여 주주총회일의 전일까지 공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65조의19(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생 략)	제165조의22(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현행 제165조의19와 같음)
제165조의20(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생 략)	제165조의23(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현행 제165조의20과 같음)
제43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3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명령 등을 하는 경우	2. ---------- ---------- -----

가. 제132조, 제146조제2항, 제151조제2항, 제158조제2항, 제164조제2항 및 제165조의18에 따른 조치	가. ----------제165조의21에----------
나. ~ 자. (생 략)	나. ~ 자.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